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31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redacted]

피 고 [redacted]청장

변 론 종 결 2020. 5. 26.

판 결 선 고 2020. 7.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1. 24.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인 [redacted]시 [redacted]구 F 전 112㎡, G 전 1,051㎡, H 전 967㎡, I 전 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1. 28.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15,868,03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2. 27.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증여계약 해제계약서(이하 '이 사건 해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이 사건 해제계약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망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재산 전부를 원고 A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법무법인 J 증서 2016년 제186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7. 2. 8. 원고들에게 취득세 101,658,250원, 지방교육세 8,713,560원, 농어촌특별세 5,809,040원 합계 116,180,850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2. 27. 피고에게 '증여자 증여의사에 반한 증여로 증여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제1항에 따른 입증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7. 6.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9. 4. 18. 기각되었다.

사. 한편, 망인은 2018. 11. 16. 사망하였는데, 원고 A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고 2019.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취득세 88,245,520원, 지방교육세 5,042,600원, 농어촌특별세 6,303,250원 합계 99,591,370원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다가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요건인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없었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제계약서 및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취득세 등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세 등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원고 A는 유증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한 번의 취득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2) ①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이 성립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바, 원고들이 2016. 11. 24.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②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2016. 12. 27.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해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해제계약서 작성에 따라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해 이미 취득세에 관한 조세채권이 성립된 이상 이후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제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사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만으로는 원고들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해제 된 사실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에 의해 입증되어야만 원고들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이 사건 해제계약서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들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 해제계약서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제계약서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해제계약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해제계약서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자체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망인의 재산 일체를 원고 A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것인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078조), 증여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포괄유증받은 수증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승계하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되는 것이어서 포괄유증과 증여계약이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따라서 포괄유증에 관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그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에 의해 입증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해제계약서 작성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③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게 된 취득세 등 납부의무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서 정한 유증에 따라 원고 A가 부담하게 된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하나의 취득행위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게 된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로 보아 성립되는 것이고, 원고 A가 부담하게 된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망인의 포괄적 유증을 취득행위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각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하나의 취득행위로 인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중과세에 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끝.